

국가대표 운영규정

2014.12. 3. 제정

2019.12.12. 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협회가 관장하는 국가대표 선수단(이하 “대표단” 이라 한다.)의 구성·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대표단은 법령 및 상위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.

제3조(대표단의 구분) ① 대표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남녀 대표 선수 및 임원을 말한다.

- 국가대표선수단
- 올림픽, 아시안게임, 아시아-태평양 선수권대회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대한골프협회(이하 “협회” 라 한다)에서 정식으로 파견하는 선수단
- 기타 협회가 인정하는 대표단

② 상기 제1항의 대표단에 국가상비군(이하 “상비군” 이라 한다)을 둘 수 있으며, 그 운영과 관리는 대표단의 운영과 관리에 준한다.

제4조(대표단의 선발) ① 대표선수의 선발 및 해제는 협회 국가대표 및 국가상비군 선수선발규정(이하 “선발규정” 이라 한다)에 의거 선발한다.

② 특정대회(올림픽, 아시안게임, 아시아-태평양 선수권대회 등)를 목적으로 한 선수 선발방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, 기 선발된 선수라 하더라도 특정대회 파견전(파견중) 협회(연맹 포함)에서 징계를 받은 자 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 회부된 자는 파견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2.12.>

③ 상기 제1항에 의해 선발된 선수 및 코치, 감독은 회장이 임명한다.

제5조(대표단의 구성 및 인원) ① 대표단은 회장이 임명한 코치, 감독, 선수 및 지원 인력(사무국 직원)으로 구성된다.

② 대표단의 선수인원은 선발규정에 의거 선발하되, 필요에 따라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, 주요 국제대회 준비 등을 위하여 상비군을 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(경기일정의 결정) 협회는 국제골프기구와 산하연맹과 매년 주요경기 일정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며, 매년 초 상호 합의를 통해 경기 일정을 확정한다.

단, 이후 제기된 대회 또는 경기에 대해서는 추가 합의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(선수단의 소집 및 통보) ① 대표단의 코치 또는 감독은 선수의 소집일정 및 훈련계획을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협회는 대표단의 소집일정을 소집일 7일 전까지 선수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통보하고, 선수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수의 참가 여부를 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상기 제2항의 통보로는 우편물, FAX, e-mail을 포함하고, 전화, 메시지 등은 보조수단으로 한다.

④ (소집불참) 선수가 부상 등 합당한 사유로 인하여 소집에 응할 수 없게 된 경우 선수는 상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협회에 통보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, 협회는 결손된 선수인원에 한하여 소집일 3일 전까지 추가로 선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. 단, 불참 선수는 반드시 서면으로 불참사유(부상 시 진단서 첨부)를 제출하여야 하며, 소집기간 및 대표단 해제 3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어떠한 공식경기에도 참가할 수 없다.

⑤ (긴급소집) 대표단의 코치 또는 감독은 소집기간 중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인원 결손으로 긴급히 선수의 추가 소집이 필요한 경우 선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선수소집 개시일) 대표단의 코치 및 감독은 목표 대회의 소집일에 대해 협회의 승인을 득한 후 선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9조(훈련기간) ① 훈련기간은 목표 대회를 대비한 협회 훈련계획 및 연도별 계획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.

② 지도자는 협회의 기본 훈련계획에 의한 훈련기간 내에 훈련 실시가 곤란하거나 훈련실시 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협회는 훈련효과 증대를 위하여 매주 주말휴가와 격월 1주일 이내의 인터벌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10조(감독, 코치 등 지도자 선임) ① 국가대표 훈련참가 지도자는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2년 이상의 골프 지도경력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1호에 해당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9.12.12.>

1. 체육 관련 학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종목의 지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또는, 해당종목의 국가대표선수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소지자에 갈음하여 국가대표지도자로 선임할 수 있다.

<개정 2019.12.12.>

2. 1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9.12.12.>

② 협회는 전항의 지도자 이외에 트레이너를 둘 수 있다.

③ 협회가 인정하는 국가대표 훈련 지도자는 올림픽대회, 아시아경기대회 등 협회가 정식으로 파견하는 대회에 한한다.

제11조(지도자의 의무)

① 지도자는 대표단의 대외적으로 대표하며, 팀의 행정 및 대외적 역할을 위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② 대표단의 감독 또는 코치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대표단 소집 관리
2. 선수단 관리,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
3. 선수의 경기력, 부상 등으로 인한 교체 건의
4. 각종 국내.외 참가 대회의 훈련 및 결과보고
5. 기타 대표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사항의 건의

제12조(선수의 의무) ① 대표단에 선발된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.

② 대표선수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.

1.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훈련 및 소집에 응할 의무
2. 지도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할 의무
3. 대표단의 규율을 준수할 의무
4. 성실한 훈련태도로 훈련에 임할 의무
5. 품위유지 및 선수 상호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할 의무

제13조(계획서 및 보고서의 제출) ① 감독 또는 코치는 훈련 또는 대회 전 계획서를, 훈련 또는 대회 후 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상기 제1항의 계획서 및 보고서 양식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협회가 이를 별도로 정한다.

제14조(포상) ① 지도자 및 선수 등에 대한 포상은 협회에서 정한다.

② 포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1. 대표단의 운영 및 조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자
2. 주요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데 크게 공헌한 자
3. 훈련 및 관리에 전념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자
4. 평소 훈련을 성실히 수행하고 경기력이 뛰어나며, 대표단의 인화단결에 모범을 보인 자
5. 기타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제15조(징계) ① 본 규정에 해당되는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징계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의하며,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회부와 동시에 대표팀 지도자 및 국가대표(상비군) 자격이 정지된다. <개정 2019.12.12.>

② 징계 양정을 위하여 협회는 징계의 건의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.

③ 다음 각 호 및 본 규정에 해당되는 지도자 또는 선수에 대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(연맹체 또는 시도골프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포함)에 징계 심사 대상으로 회부할 수 있다. 단, 경기력향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수가 국가대표(상비군)로서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 국가대표(상비군)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기력향상위원회 결의로 임시 출전정지 또는 임시 자격정지와 같은 긴급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단, 경기력향상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징계를 심사하는 연맹체 위원회 또는 시도협회 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긴급제한 조치를 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9.12.12.>

1.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상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<개정 2019.12.12.>
2. 운영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훈련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여 골프인으로서의 품위나 명예를 훼손한 자 <개정 2019.12.12.>

제16조(수당 지급) ① 수당이라 함은 각급 대표단의 훈련에 대하여 협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일비를 말한다.

② 실비라 함은 각급 대표단 선수가 소집, 훈련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협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

③ 협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④ 상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실비의 종류, 금액 및 지급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훈련관리지침에 준한다.
- ⑤ 국고보조 등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.
- ⑥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7조(유니폼 착용) ① 대표단의 감독, 코치 등을 포함한 임원진과 모든 선수는 대표단의 공식훈련과 경기 중 또는, 본 회의 요청에 따라 대표단원의 자격으로 공식행사 등에 참가할 경우 협회로부터 지급받은 용품을 착용하여야 한다.

- ② 상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회에서 지급되는 용품과 다른 용품을 착용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선수는 사전에 사유서를 협회에 제출하고, 협회의 지시 및 조치에 따라야 한다.

제18조(초상권) ① 대표단은 개인의 초상권 및 대표단원들의 집합적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협회가 보유한다.

- ② 대표단은 협회의 지시에 의한 홍보 및 교육활동 또는, 경기 종료후 각종 촬영 및 인터뷰에 응하여야 한다.
- ③ 대표단은 자신의 대표팀 초상을 이용하여 각종 이벤트, 방송 및 광고 출연, 출판 등을 할 때에는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④ 본 조의 초상권, 집합적 초상권 및 대표팀 초상 등에 관한 정의는 협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19조(선수단의 보험) 협회는 대표단 소집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선수의 부상, 사고 및 질병 등에 대비하여 내국인 보험법에 따라 협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20조(경과) 대표단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이를 정한다. <개정 2019.12.12.>

부 칙 <2014.12.3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(2014.12.3)로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9.12.1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.